

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(안)

의안 번호	9
----------	---

제출년월일 : 1995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개정이유

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('95. 7. 1, 대통령령 제14703호)에 따라 명칭의 변경 및 보상금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같은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주요골자

- 보상금의 지급기준이 되었던 '일비'를 '회의수당'으로 변경
- 보상금의 지급요건이 중복될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
- 부지사의 직제가 행정·정무부지사로 나뉘어짐에 따라 '부지사'를 '행정부지사'로 함.
- 심의회 위원중 '도 본청 관련 실·국장 1인'을 '도 기획관리실장'으로 하고 심의회 간사는 도지사가 임명한 '도 소속 공무원'에서 '도 기획관'으로 함.

근거법령

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2 및 제39조

조례(안) : 따로 붙임

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중 "일비 라"를 "회의수당 이라"고 하고 "일비를"을 "회의수당을"로 한다.

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"일비"를 각각 "회의수당"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제1항 각호의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,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.

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중 1인은 도 기획관리실장이 되며 나머지 3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제9조제2항제2호는 삭제하고 제3호와 제4호를 각각 제2호와 제3호로 한다.

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간사는 도 기획관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